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70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채현일・이정문・김영배
김현정・한민수・박지혜
서영교・정진욱・허성무
양부남・모경종・김동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당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당량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필요한 투표소에 적시에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투표용지의 인쇄・배분 및 예비 물량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분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역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1조제10항·제11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선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매 선거마다 선거일 45일전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 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의 등재자 상황 및 투표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동 추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산정·결정하여야 한다.

⑪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보안구역 등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확보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에 발생하는 부족 사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이를 즉시 배분·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의 보관·배분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선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매 선거마다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 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⑨ (생 략) <신 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의 등재자 상황 및 투표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동 추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산정·

	결정하여야 한다. ⑪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보안구역 등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확보·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에 발생하는 부족 사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이를 즉시 배분·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의 보관·배분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